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30397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조나원

피고, 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5. 8. 13. 선고 2025가소10122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2.

판 결 선 고 2026.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형가전제품, 주방용품 등을 수입,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D'라는 제목의 상품정보 상세페이지 사진(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창작하여 2022. 3. 22.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 2024. 7.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24. 12. 31. 춘천지방법 검찰청 속초지청으로부터 '피고는 2024. 7. 9.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원고의 편집저작물인 "D의 상세페이지"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24. 12. 31. 자신이 운영하던 'E'를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무단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이용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 사건 저작물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운영하던 'E'가 2024. 12. 31.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5. 2.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희수

판사 김찬미

판사 나유진